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8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4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 등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4
가.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9
2.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14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14
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상향과 적용기한 연장(황정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박지혜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24
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32
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및 관련 조세특례 개요 ····· 32
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35
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41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납입기간 단축 등(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44

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49
5.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박희승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53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63
7.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과세특례 연장 등(엄태영·윤준병·최은석·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68
8.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74
가.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79
9.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82

Ⅰ.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08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22.

(3) 회 부 일 : 2024. 8. 23.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등에 대한 다양한 세액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며, 상가임대료 인하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와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의 조기정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액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

자, 주택수요자 그리고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6조).

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제10조제1항).

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제29조의6제1항).

마.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안 제96조의3제1항).

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97조의3제1항).

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제97조의9제1항).

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24제1항).

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

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18조의2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 등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유형별 감면율</td><td>□ 감면율 정비, 감면한도 신설, 적용기한 연장 등
○ (현행과 같음)
○ 유형별 감면율
- 수도권 감면율 축소(2026. 1. 1. 이후 창업부터 적용),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등 감면율 정비 (정부안, 정태호의원안)</td></tr>
<tr><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기본 감면</th><th rowspan="2">추가 감면</th></tr>
<tr><th>수도권 과밀억제권역</th><th>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th></tr>
<tr><td>창업 중소기업</td><td>-</td><td>5년 50%*</td><td rowspan="5">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td></tr>
<tr><td>청년·생계형**</td><td>5년 50%</td><td>5년 100%</td></tr>
<tr><td>벤처기업</td><td colspan="2">5년 50%*</td></tr>
<tr><td>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td><td colspan="2">5년 50%*</td></tr>
<tr><td>창업 보육 센터사업자</td><td colspan="2">5년 50%</td></tr>
</table>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2024. 12. 31.): 3년 75%, 2년 50%
** 생계형 창업지원 대상매출액 기준: 연 8,000만원 이하
</td><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기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th><th colspan="2">기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th><th rowspan="2">추가 감면</th></tr>
<tr><th>수도권</th><th>수도권 밖 **</th></tr>
<tr><td>창업 중소기업</td><td>-</td><td>5년 25%</td><td>5년 50%</td><td rowspan="5">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td></tr>
<tr><td>청년·생계형</td><td>5년 50%</td><td>5년 75%</td><td>5년 100%</td></tr>
<tr><td>벤처기업</td><td colspan="3">5년 50%</td></tr>
<tr><td>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td><td colspan="3">5년 50%</td></tr>
<tr><td>창업 보육 센터사업자</td><td colspan="3">5년 50%</td></tr>
</table>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 적용기한 도래 종료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 적용기한 연장:
~2026. 12. 31. (엄태영의원안),
~2027. 12. 31. (김주영의원안),
</td></tr>
</table>

현 행	개정안
	~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 <신 설>	○ 감면한도: 연간 5억원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2024. 12. 31.	- 2026. 12. 31 (엄태영의원안) - 2027. 12. 31 (정부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5. 1. 1.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적용례: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엄태영의원안 2024. 10. 24. 발의(의안번호 4875), 김주영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29),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5건의 개정안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율 정비 또는 감면한도의 설정을 통해 세제지원의 정책적 합리성을 제고하거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안·정태호의원안은 지역균형발전 및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①과밀억제권역 밖인 수도권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25%p 축소하고,[1]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율을 상향하며(고용증가율의 50%→100%), ②감면한도를 연간 5억원으로 신규 설정하고, ③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제외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등에 따라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간 50~100%의 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함.

동 제도는 1994년에 도입된 이후 기업의 형태(창업 보육, 벤처) 및 업종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과 고용유발에 대한 감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왔음.

또한, 지방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중소기업의 창업에 초점을 맞추되, 벤처·에너지신기술·창업보육 등 경제

1)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축소하지 않고, 수도권 밖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대상이 추가되었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개정연혁]

개정연도	개정내용
1994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설
1998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1999년	일몰 신설(2003.12.31까지)
2004년	감면기간 축소(6년 → 4년), 일몰 연장(2006.12.31까지)
2007년	일몰 연장(2009.12.31까지)
2010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추가, 일몰 연장(2012.12.31까지)
2013년	감면기간 연장(4년 → 5년), 업종 추가(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몰 연장(2015.12.31까지)
2016년	일몰 연장(2018.12.31까지)
2017년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율 인상
2018년	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인상, 고용증가시 추가감면 적용 등 청년·생계형 감면율 인상, 일몰 연장(2021. 12. 31까지)
2019년	감면 대상 업종 변경
2021년	생계형 창업기업 매출액 기준 연 4,800만원 → 연 8,000만원 일몰 연장(2024.12.31.까지)

한편, 2018년부터는 청년창업 및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2022년부터는 8,000만원 이하)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 일반 창업중소기업에 비해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 중임.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내용]

구 분	일반 창업	청년·생계형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50% 감면	5년간 100% 감면

또한, 신성장서비스업[2)]에 대한 우대감면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도

입되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75%와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4,864억원에서 2023년 7,62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및 2025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세	2,290	3,519	4,841	5,806	6,189
법인세	2,574	2,561	2,788	2,640	2,764
소계	4,864	6,080	7,629	8,446	8,95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⑫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10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가.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엄태영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주영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윤준병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정부안·정태호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을 제외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요약]

<table>
<tr><th>구분</th><th>엄태영
의원안</th><th>김주영
의원안</th><th>윤준병
의원안</th><th>정부안,
정태호
의원안</th></tr>
<tr><td>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 외)</td><td rowspan="2">2년 연장</td><td rowspan="2">3년 연장</td><td rowspan="2">5년 연장</td><td>3년 연장</td></tr>
<tr><td>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td><td>적용기한
도래 종료</td></tr>
</table>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창업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창업 초기의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음. 국가의 경제발전과 미래 성장을 고려할 때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창업 5년 이내 폐업률이

약 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임. .

[2021년 기준 신생기업 생존율]

(단위: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4.1	54.2	46.3	38.8	34.3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특히 동 제도는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춰 기업의 법인의 사업소득과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의 사회진출에 기여할 수 있음.

2022년 말 기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3.3만개사는 전년 대비 8.1%(5.6만명) 늘어난 74.6만 명을 고용하여, 같은 기간 전체기업의 고용규모가 2.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그리고 같은 기간 전체기업의 청년 고용이 1.2% 감소한 것과 달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청년 고용은 3.6% 성장하였음.[3)]

셋째,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수 있음.

3)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고용증가율, 전체기업 대비 높아', 2023. 3.

서비스 산업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취업자 비중이 전체 산업의 71.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의 중요한 부분임.[4] 그러나 서비스업의 2021년 기준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5.8% 수준이고 OECD 36개국 중 27위로 낮은 수준임.[5]

따라서 우대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신성장서비스업 기업들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액감면의 특성상 소득이 큰 기업에게 혜택이 증가하여 과세형평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초기에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조세혜택을 받는 5년 내에 다시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 세액감면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적용기한 연장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평균 8,953억 4,000만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수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6]

셋째,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제조업에 대한 역차별이 지속되어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7년 대비 2022년에 서비스업 창업감면액이 536% 증가하고 창업감면기업수가 302% 증가한 점을 고려

4) 공공데이터 포털, 기획재정부_서비스산업 주요 지표

5)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 동향」, 2024. 4.

6)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2024. 9.

할 때, 그간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의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업 세액감면 변동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22년	증가율
창업감면액	전체	810	1,672	106
	서비스업	66	419	536
창업감면기업수	전체	5,090	10,080	98
	서비스업	688	2,769	302

자료: 기획재정부

넷째, 동 제도를 활용하여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은 탈루 사례를 국세청이 조사한바 있음.

또한, 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폐업 후에 재개업한 사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한 사례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하여 부당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7)]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2년, 3년 또는

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찾아냈다', 2024. 4.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8]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0%를 공제하고, 중소

---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하며, 코스닥상장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5~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9]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			추가 [1]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15 [2]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주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중소기업 졸업 후 ~3년)15%, (중소기업 졸업 후 4~5년)10%, (중소기업 졸업 후 6년~)8%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되었음.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임.

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3%이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4%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한편,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었음.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등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구분	분야	기술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4. 2. 29.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설계・제조기술(0.35㎛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분야	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향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분야	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4. 2. 29. 개정)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0년 2조 7,340억원에서 2023년 4조 6,30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3조 99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3	1,08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2	29,910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30,990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0년 6,226억원에서 2023년 2조 79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실적회복으로 2025년에는 4조 2,88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29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134	41,590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402	42,88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1,660개가 1조 5,150억 1,8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18개가 3조 70억 4,0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370	26,931	1	11
20억원 이하	6,119	56,352	4	36
50억원 이하	11,814	203,843	17	536
100억원 이하	8,470	254,558	32	1,665
200억원 이하	5,506	278,567	57	2,980
300억원 이하	2,090	160,621	44	2,761
500억원 이하	1,797	198,988	93	7,155
1,000억원 이하	1,169	229,272	171	26,106
5,000억원 이하	324	102,498	872	319,207
5,000억원 초과	1	3,388	427	2,646,583
합계	41,660	1,515,018	1,718	3,007,040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8,926개가 4,013억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52개가 1조 3,789억 2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063	2,172	2	104
20억원 이하	874	3,752	2	84
50억원 이하	1,744	16,690	9	80
100억원 이하	1,392	28,987	22	240
200억원 이하	1,520	59,975	76	2,187
300억원 이하	789	48,214	52	2,327
500억원 이하	757	70,227	98	3,921
1,000억원 이하	610	102,277	219	12,769
5,000억원 이하	u	56,247	833	138,317
5,000억원 초과	u	12,759	439	1,218,875
합계	8,926	401,300	1,752	1,378,902

자료: 국세통계포털

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상향과 적용기한 연장(황정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박지혜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 R&D 세액공제(제10조)
○ 유형별 공제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1)]</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최대 2</td><td>8~15[2)]</td><td>25</td><td>-</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20</td><td>30</td><td>최대 1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30</td><td>40</td><td>최대 10</td></tr>
</table>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년)15%, (4~5년)10%, (6년~)8%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25~40%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 2024.12.31.
</td><td>
□ R&D 세액공제(제10조)
○ 유형별 공제율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황정아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최대 2</td><td>8~15</td><td>25</td><td>-</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30</td><td>50</td><td>최대 1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40</td><td>60</td><td>최대 10</td></tr>
</table>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35~50%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박수영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최대 2</td><td>8~15</td><td>25</td><td>-</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20</td><td>30</td><td>최대 1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40</td><td>50</td><td>최대 10</td></tr>
</table>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25~40%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 연장
- 2026.12.31. (최은석의원안, 천하람의원안)
- 2027.12.31. (황정아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td></tr>
</table>

현 행	개정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2029.12.31.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2030.12.31. (김영진의원안) - 2034.12.31.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 국가전략기술 2028.12.31. (박지혜의원안) - 국가전략기술 2034.12.31. (박수영의원안)

* 김정재의원안 2024. 6. 13. 발의(의안번호 463), 김태년의원안 2024. 7. 3. 발의(의안번호 1361), 김종양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31), 황정아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50), 박수영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84), 김영진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26), 정성호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3), 이병진의원안 2024. 7. 23. 발의(의안번호 2125), 최은석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86),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박수민의원안 2024. 8. 29. 발의(의안번호 339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최민희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97), 박지혜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721), 허성무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25), 안도걸의원안 2024. 10. 25. 발의(의안번호 4923), 천하람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4), 신영대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83),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2024년)을 연장하여 주요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과 관련하여, 황정아의원안은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30~4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35~50%, 중소기업 50~6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

국가전략기술 공제율과 관련하여, 박수영의원안은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50~60%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황정아

의원안은 대·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60~70%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최은석의원안·천하람의원안은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황정아의원안·정성호의원안·박성훈의원안·박수민의원안·정부안·최민희의원안·허성무의원안·안도걸의원안·신영대의원안·정태호의원안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종양의원안·윤준병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김영진의원안은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정재의원안·김태년의원안·이병진의원안은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의 적용기한만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박수영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의 적용기한만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요약]

적용기한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4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모두 연장	최은석의원안, 천하람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만 연장	-	-	박지혜의원안	-	-	박수영의원안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과기부에서 선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등 12대 국가전략기술[10] 분야 기업을 조사한 결과, R&D 세액공제 지원이 기술 성장성, 성공한 R&D 과제수, 최신특허 인용 등 혁신활동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11]

또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업의 조세 지원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기업은 일반적으로 R&D 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한 비용을 연구개발 활동 재투자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12]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외부효과도 더욱 크게 발생하므로 세제지원이 R&D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둘째, 주요국들이 주요기술에 대한 R&D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10)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

11) KISTEP, 「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연구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2023. 5.

12) 소기업은 절감된 비용을 일반적으로 R&D 인력 충원에 활용하고, 중기업 이상 절감된 비용을 R&D 인력 충원과 R&D 설비 투자에 활용하였음.

예를 들어, 대만은 2023년에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켜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R&D 비용의 2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주요국 반도체 인센티브(투자대비 %)]

구 분		한국	대만	미국	일본
세액공제	R&D	30~50	25	(증가분) 20	1~17
	투자	15~35	5	25	-
투자보조금		-	-	최대 15	33~50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 6.)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세액공제 제도가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있어,[13] 동 제도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둘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공제율 수준이 높고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세수감소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성장·원천기술은 기술분야가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13) 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24. 9.

2017년 11개 분야·157개 기술에서 2024년 14개 분야·270개 기술로 늘어났고, 국가전략기술 역시 2022년 3개분야·36개 기술에서 2024년 7개 분야·66개 기술로 늘어나 세수감소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

일반 기술의 경우, 2022년 조세지출액이 2018년 대비 1,305억원 증가(2조 1,553억원 → 2조 2,858억원)하였으나, 신성장·원천기술은 7,344억원 증가(1,447억원→8,791억원)하였고,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조세지출규모가 4,524억원에 달하여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추이]

구 분	2018	2022	증감
일반	2조 1,553억원	2조 2,858억원	1,305억원
신성장·원천기술	1,447억원	8,791억원	7,344억원
국가전략기술	-	4,524억원 (신설)	-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셋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가 2026년 2조 542억원, 2035년 2조 6,80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23조 5,486억원(연평균 2조 3,5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기술별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연도	2026	2027	…	2034	2035
신성장·원천기술	-8,569	-8,826	…	-10,855	-11,181
국가전략기술	-11,972	-12,331	…	-15,166	-15,621

자료: 예산정책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총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10년 연장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542	-21,158	-21,793	-22,446	-23,120	-23,813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24,528	-25,264	-26,021	-26,802	-235,486	-23,549

자료: 예산정책처

넷째,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처는 황정아의원안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고, 기술유형별로 R&D 세액공제율을 10~20%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가 2026년 4조 5,329억원, 2030년 1조 7,43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조 4,462억원(연평균 3조 4,8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또한, 예산정책처는 박수영의원안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로 10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10%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가 2026년 1조 6,253억원, 2035년 2조 1,206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18조 6,319억원(연평균 1조 8,6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다섯째,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 분야를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해외 주요국 사례는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처럼 R&D 세액공제율을 기술 범주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구조를 복잡하게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각 범주의 기술을 적절하게 선정하지 못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및 관련 조세특례 개요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성과급 지급 등 일정한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14] 다음과 같이 6개 유형으로 구분됨.[1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상 성과공유제 유형]

유 형	내 용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성과보상공제 가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가입
임금수준 상승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

1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6조의2

유 형	내 용
운영	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기타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복지지원 중소기업, 여가친화 인증기업

2018년 2월 성과공유제 실시 이후 성과공유기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기준 102,35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단위: 개사)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과공유기업 수	10,794	31,171	51,275	72,222	102,355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년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성과공유제 유형 중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급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임. 동 제도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됨.

동 제도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 연장과 함께 성과급 지급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하였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한편, 종전 시행령에서는 경영성과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만 동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1년 세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되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동 제도를 적용하게 되었음.

동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0년 59억원에서 2023년 18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1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26	36	44	64	67	72
법인세	33	50	69	116	137	143
합계	59	86	112	180	204	215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제19조제1항)	□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 대상:「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중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기업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제액: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	○ 공제액: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4.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 시행일: 2025. 1. 1. ○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적용기한: 2029. 12. 31. ○ (좌 동)

*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3건의 개정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율 하향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안·정태호의원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은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중소기업 인건비 수준은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성과공유기업 직원의 1인당 인건비가 비성과공유기업에 비해 약 1,20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과공유기업 여부별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성과공유기업 (A)	57.4	61.3	66.2	70.7
非성과공유기업 (B)	51.6	53.2	55.9	59.0
전체기업 평균	54.7	57.5	61.3	65.2
집단 간 차이 (A-B)	5.8	8.1	10.3	11.7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년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중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는' 응답자는 64.4%, '고려하지 않는' 응답자는 35.6%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 '낮은 연봉수

준'(55.3%)이 가장 높았음.[16]

동 제도를 지속 시행함으로써, 경영성과급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22년 기준 대기업 평균소득은 591만원으로, 중소기업 평균소득(286만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기업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27만원 증가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 평균소득은 19만원 증가한 것에 그쳤음.

[기업규모별 평균소득 및 소득분포 현황]

(단위: 만원, %)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2022년	591	286
2021년	563	266
증감(률)	27 (4.9)	19 (7.2)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년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이와 같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성과급의 지급은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셋째, 세액공제율 하향조정으로 조세지출 규모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16)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 2023. 1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의 총 세액공제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중소기업이 신고한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로 세액공제 신고가 이루어진 2020년에 206개 기업이 33억 4,7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고했고, 신고법인수와 신고금액이 증가하여 2022년에는 435개 기업이 62억 3,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했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206	3,347	308	4,593	435	6,231

자료: 국세통계포털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최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성과공유 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하면 성과공유 기업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과공유기업은 2019년 1,275개사에서 2022년 2,928개사로 증가하였는데, 2023년에는 전년대비 317개사 감소하여 2,611개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영성과급 지급 성과공유기업 현황]

(단위: 개사)

연도	'19	'20	'21	'22	'23
경영성과급 지급 성과공유기업 수*	1,275	1,489	2,138	2,928	2,611

* 실제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기업 및 지급을 약정한 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조세지출 평가 및 건의서

최근 고물가 및 경기위축 등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공제율이 축소되면 경영성과급 지급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져 경영성과급 지급을 중단하는 기업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

둘째, 세액공제율 하향조정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의 재정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과공유제 중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재정부담'으로 나타났음.

[경영성과급 지급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재정부담	인센티브 부족	복잡한 서류 및 행정절차	노·사 합의된 성과목표 설정	직원평가 지표설정	제도 효과성 불확실	직원 협업감소	세금부담	기타
응답 비율	50.4	18.4	11.1	5.7	9.8	2.9	0.4	0.0	1.2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 2021. 4

202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세액공제 1,432만원을 신고했는데 공제율이 15%에서 10%로 하향조정되면 세부담이 약 477만원 늘어남.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9조제2항)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및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외	○ (현행과 같음)
○ 감면내용: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3건의 개정안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것이고, 윤준병의원안은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것임.

□ 3건의 개정안과 같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유지되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어,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유지되므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이라는 성과공유제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소득세액 계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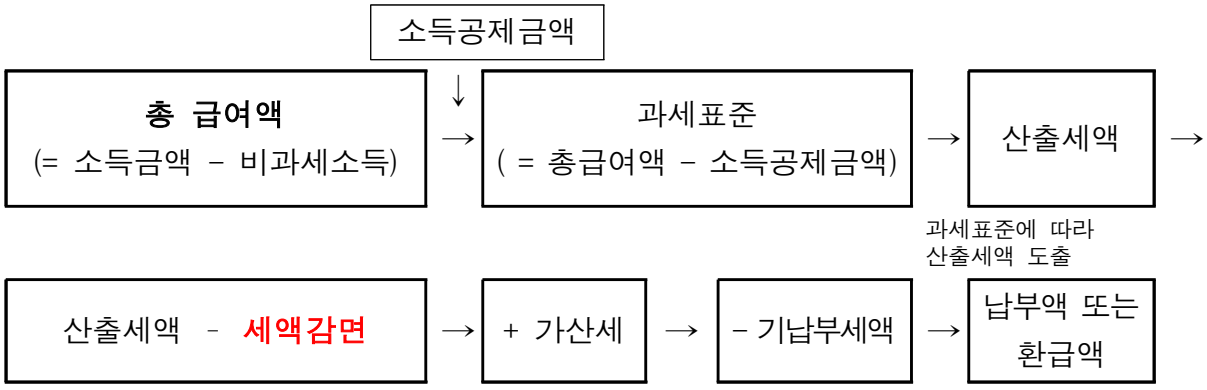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기업(591만원)과 중소기업(286만원) 간 평균소득 격차는 305만원[17]으로, 동 제도의 연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균소득 격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특례제도를 연장하는 3건의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또는 우수인력의 취업 또는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1년 기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대하여 "있다"는 답변이 62.5%, "없다"는 답변이 37.5%이며, 없다고 답변한 경우

17)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2024. 2.

그 이유에 대하여 '낮은 급여수준' 외에도 '고용불안정',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수준',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등의 순으로 답변한 것으로 조사[18]되었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2021년 기준)]

(단위: %)

대기업 보다 낮은 성취감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고용 불안정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낮은 급여 수준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대기업 보다 낮은 복지 수준	기타
8.4	5.0	23.1	8.6	23.3	1.1	11.1	17.0	2.2

주: 사례수 772명 기준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18)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납입기간 단축 등 (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제29조의6)	□ 적용기한 연장 등
○ 감면대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함)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감면대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함)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한 근로자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한 근로자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감면내용: 기업의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비율별 감면 - (청 년) 중소기업 근로자: 90% 중견기업 근로자: 50% - (그 외)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김주영의원안) - 2027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엄태영의원안 2024. 8. 1. 제출(의안번호 249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제출(의안번호 3085), 한병도의원안 2024. 9. 4. 제출(의안번호, 3661), 김주영의원안 2024. 10. 24. 제출(의안번호 4868),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6건의 개정안은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②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3년 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③ 동 특례를 적용받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김주영의원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엄태영·한병도·정태호의원안과 정부안은 3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윤준병의원안은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의 경우 공제납입금의 최소 납입기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면서 동 특례를 적용받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19]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20]의 유형 중 하나로서,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수준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으로 정한 성과공유 유형(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우대 및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출처: 2023년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2023. 12.,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에 최초 도입되었음.

현행 소득세 감면규정은 2015년 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통상 '내일채움공제'라 불리움)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액은 최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되고, 수령한 공제금 중 근로자가 납부했던 납입금과 기업의 기여금을 제외한 부분은 14%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21],

기업의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22] 기존의 월급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과세(세율 6%~45%)되어 때로는 당초 적립금액보다 실수령이 작게 되는 등 당초의 공제금 지급 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임.

동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재직자 중 해당 기업의 대표에 의해 지정된 인력(이하 "핵심인력")이 해당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으로 1:2 이상[23]의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한 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경우 5년간 최소 2천만원 이상의 공제금과 이자액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핵심인력 내

---

2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2)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23)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10만원을 납입하면, 사업주가 20만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함.

일채움공제'만 운영되었으나,

2018년부터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정규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청년과 기업, 정부가 최소 월 12만원 : 월20만원 : 월30만원의 비율로 5년간(정부는 3년간) 공제금을 적립한 후 그 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액을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가 추가되어 2022년까지 운영되었고,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가 운영되었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유형]

구분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대상	근로자	핵심인력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5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요건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지정한 인력	청년(만15세~34세)	
가입기간		5년	5년	3년
납입비율		1 : 2 이상 (근로자 : 기업)	월12만원 : 월20만원 : 정액 7회 (근로자 : 기업 : 정부)	월16.7만원 : 월16.7만원 : 정액 6회 (근로자 : 기업 : 정부)
적립금액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1,800만원 이상
운영기간		2014년 8월~	2018~2022년	2023년(한시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따른 2023년도 감면세액은 38억원이며, 2025년 17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지출 규모[24)]]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2025 (전망)
조세지출	-	8	29	31	38	157	170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4) 동 특례의 경우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공제금 수령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세지출도 없었음.

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6건의 개정안은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김주영의원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엄태영·한병도·정태호의원안과 정부안은 3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윤준병의원안은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 6건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제도의 지원을 연장하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평균소득은 대기업 597만원, 중소기업 286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은 중소기업 7.2%로 대기업 4.9%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25].

25)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결과」(통계청). 2024. 2.27.

[기업규모별 평균소득]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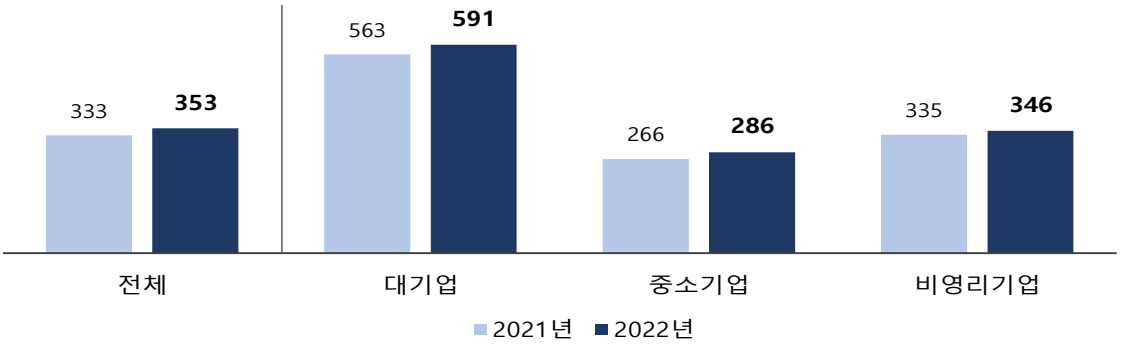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종업원 수 1~4인 기업의 경우 2,471천원인데 반해 300인 이상 기업은 6,071천원으로, 종업원 수 1~4인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 간 1인당 월평균 임금의 차이가 3,600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2,763천원과 비교시 증가한 것이며, 기업의 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업 규모별(종업원 수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1~4인 (A)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B)	차이 (B-A)
2013년	1,684	2,219	2,625	3,007	3,381	4,447	2,763
2023년	2,471	3,241	3,728	4,073	4,610	6,071	3,6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4. 8

둘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당초 공제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어 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2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평균재직기간은 52.1개월로 공제 미가입자(18.0개월) 대비 2.9.배 오래 재직하였고,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평균재직기간은 52.8개월로 공제 미가입자(19.2개월) 대비 2.74배 오래 재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등 평균재직기간]

(단위: 개월)

청년재직자					핵심인력				
공제가입자			미가입자(B)	장기재직효과(A/B)	공제가입자			미가입자(B)	장기재직효과(A/B)
전체(A)	유지	해지			전체(A)	유지	해지		
52.1	55.4	42.6	18.0	29.0	52.8	56.6	47.4	19.2	2.7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다만, 동 특례제도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유도 또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형성 및 장기재직 유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27],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의 연차별 해지율을 살펴보면 가입 초반인 1년차(12.1%) 및 2년차(11.5%)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6)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2022.12.),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7)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2022.12.),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5.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박희승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6조의3)	□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폐업소상공인 포함)인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시행령 :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업, 사행오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현행과 같음)
○ 공제내용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 임대료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임대료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내용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 공제율 80%로 상향조정(박희승의원안)
○ 공제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공제기간 : 임대료 인하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간	○ 공제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정부안,정태호의원안) -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엄태영의원안) - 공제기간 삭제 (박희승의원안,안도걸의원안,윤준병의원안)

* 박희승의원안 2024. 6. 11. 제출(의안번호 321), 안도걸의원안 2024. 6. 24 제출(의안번호 833), 엄태영의원안 2024. 8. 14. 제출(의안번호 2827),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제출(의안번호 3085), 정부안 2024. 9. 2. (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의안번호 4975)

□ 6건의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①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10%p 상향조정(박희승의원안)하고, ② 공제특례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정부안, 정태호의원안) 또는 2026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까지 연장하거나, 공제기간을 삭제(박희승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윤준병의원안)하려는 것임.

□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도 불리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28]인 임차인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료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당초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29]되었으며 2020년 12월, 2021년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29) 2020년 3월 도입 당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2021년 11월 개정으로 2020년 2월 1일~2021년 6월 30일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폐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3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개정을 통해 다섯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는데, 2021년 3월 개정 시에는 기준소득금액[30]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한 바 있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연혁 및 개정안과의 비교]

개정 시기	'20년		'21년		'22년	'23년	박화승 의원안	안도걸·윤준병 의원안	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엄태영 의원안
	3월	12월	3월	12월	12월	12월				
공제율	인하액의 50%		인하액의 70%				80%	(현행과 같음)		
			(단,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50%)							
공제 기간	2020. 6.까지	2021. 6.까지	2021. 12까지	2022. 12까지	2023. 12까지	2024. 12까지	공제기간 삭제		2025. 12.까지	2026. 12.까지

2023년에는 소득세에서 801억원, 법인세에서 205억원이 감면되어 총 1,006억원의 조세지출이 있었음.

[연도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전망)	2025년(전망)
전체	1,672	1,970	1,006	513	545
소득세	1,448	1,597	801	416	443
법인세	225	373	205	98	10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30) 기준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5항)

□ 먼저, ①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려는 부분은 보다 많은 임대인의 상가임대료 인하를 지속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임.

[최근 3년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자 수]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인	법인	합계	개인	법인	합계	개인	법인	합계
대상자	93,604	3,712	97,316	74,448	2,763	77,211	35,566	1,503	37,069

자료: 기획재정부

동 조세특례의 2021년 대비 2023년 적용인원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감소하였고, 2024년 10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이 대부분 해제되었으며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 심화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사업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정안과 같이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면 보다 많은 임대인의 상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상공인 체감경기 현황]

구분	2023년	2022년	2023년(전망)	2024년(전망)
소상공인 경기체감BSI	64.4	48.1	64.5	64.4
소상공인 비용체감 BSI	111.4	107.0	107.6	107.0

자료: 기획재정부 (BSI<100, 전월 대비 악화, BSI>100 전월대비 상승)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1년 국회에서 동 조세특례의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50%에

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동 조세특례로 인해 세후소득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세액공제율의 한계치가 70% 수준이라는 이유로 세액공제율을 70%로 설정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즉, 세액공제율이 70%를 넘는 경우 ① 동 조세특례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분과 ②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임대인의 종합소득이 감소하여 소득세 자체가 감소하는 효과가 더해져, 임대료 인하 전보다 세후소득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둘째, 동 조세특례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다른 제도 대비 높은 수준의 공제율(70%)을 적용[31]하고 있는 예외적인 제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다음, ②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 및 삭제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첫째, 임차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어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

31)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수준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는 상황이므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은 완화되었으나 물가상승, 높은 금리,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 심화 등의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사업부진[32]을 사유로 폐업한 사업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사업자 폐업사유 구성비율]

(단위: %)

구분	사업부진	행정처분 등[1]	기타[2]	계
2019년	41.4	5.8	52.8	100.0
2020년	43.1	6.3	50.6	100.0
2021년	45.6	7.1	47.3	100.0
2022년	46.8	6.3	47.3	100.0
2023년	48.9	5.4	45.7	100.0

주 1: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적용, 양도·양수, 해산·합병을 포함
2: 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폐업사유를 알수 없는 경우와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자료: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둘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동 조세특례의 실적을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세액공제 금액이 개인과 법인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는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집합 상가[33]

32) 폐업신고서 상 폐업사유를 의미

33) · 중대형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인 일반건축물
· 소규모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고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인 일반건축물
· 집합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인 집합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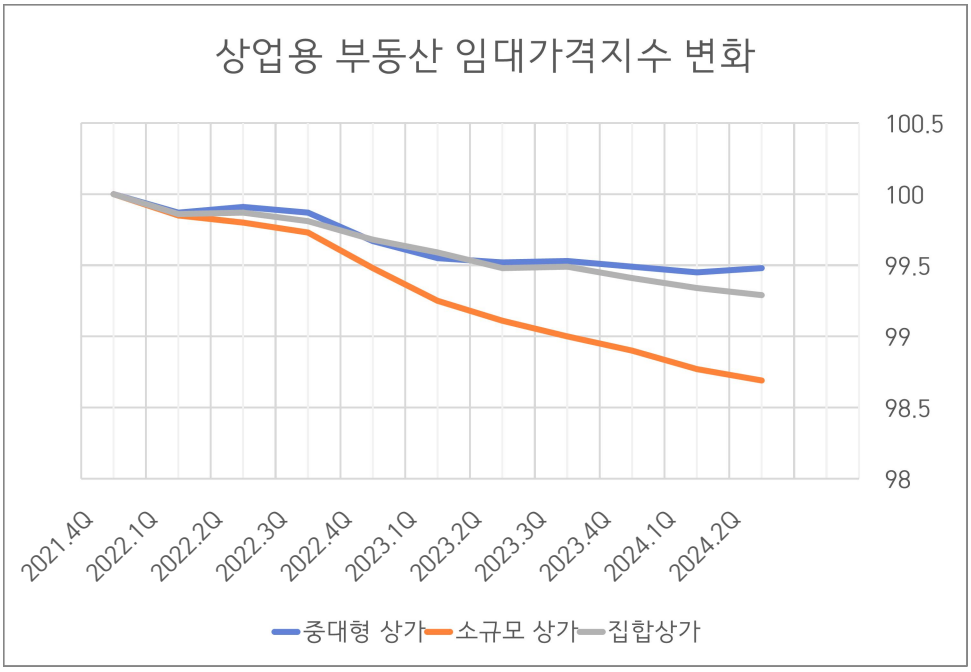

주 : 2021년 4분기를 100으로 하여 구한 상대적 지수
자료 : 부동산 통계정보,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2년 실시된 조세특례 심층평가[34]는 방역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서 본 제도의 도입·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효과성 내지 실효성[35]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상가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동 제도의 제한적인 활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1년 이하의 공제기간 연장을 검토하되 향후 국내외 경제적 여건 개선 시 점진적 폐지 추진을

건축물

3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2. 9.

35) 개인사업자의 제도 활용도(전체 정책대상자 중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사람의 비율)는 기준에 따라 4.2~8.3% 수준이며, 법인사업자는 6.9~7.3% 수준으로 나타남.

제안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전체적인 조세지출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 제80조[36]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37]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례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38],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사업의 적정 수준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효율적인 국가재원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세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국세감면액(A)	529,357	570,248	635,484	697,664	714,305
국세수입총액(B)	3,036,717	3,639,730	4,229,237	3,703,803	4,122,410
국세감면율[A/(A+B)	14.8	13.5	13.0	15.8	**15.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6	14.3	14.6	14.3	**14.6**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셋째, 동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세액공제를 규정하여 정책 도입시점과 관련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제도상 상가임대료를 인하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상가

36)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37) 0.7%p

38) 2023년 결산 기준 56조 4,000억원, 2024년 추정치 29조 6,000억원

건물을 2021. 6. 30. 이전부터 임차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야 함[39].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임대 계약이 종결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신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동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연례적인 일몰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로서 임차인의 범위는 변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40], 개정안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더라도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박희승·안도걸·윤준병의원안은 공제기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영구적인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정태호의원안은 1년간, 엄태영의원안은 2년간 공제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40) 2021년 12월 세법 개정 이후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대상 임차인의 규정은 변하지 않았음. 따라서 입법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등을 통해 동 제도가 적용가능한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정부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7조의3)	□ 적용기한 연장
○ 요건	○ 적용기한 연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현행과 같음)
- 2024년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2027년(정태호의원안·정부안), 2029년(윤준병의원안)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 임대 민간임대주택이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제외	
-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 (현행과 같음)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준수	- (현행과 같음)
○ 양도소득세 특례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70%로 적용	- (현행과 같음)

*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기한을 3년간(정태호의원안·정부안) 또는 5년간(윤준병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① 국내 거주자가 ② 2024년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41]으로 등록(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등록)하여, ③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고, ④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제한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 상의 장기보유 공제액 관련 규정[42]에도 불구하고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구 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
등록기한	2024년 말		2022년 말
	* 민간매입임대주택·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제외		
임대기한	10년		
과세특례	**양도소득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면 적	85m^2 이하		
임대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호 수	1호 이상		
임대료 상한 요건	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제외)

---

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2)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 [표 1] 보유기간별 공제율 :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1년 2%p, 최대 15년 30% 한도로 적용

동 조항은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의 공급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지난 2020년 정기국회에서 동 조항은, 2020년 7월 11일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며,

2022년이던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년 단축하여 2020년 말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주택공급의 순증효과를 유발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음.[43)]

2022년 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한이 10년인 점을 고려하여 임대기한별 과세특례(8년 50%, 10년 70%)를 10년 70%의 일원화하면서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음.

---

43) 당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① 등록임대주택 유형 중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을 폐지하고, ② 신규 등록임대주택을 최소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하며, ③ 등록 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관련 개편사항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국회 정기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반영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었음.
참고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 대책)」에는 이 외에도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 법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적용, ㉰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다주택자, 법인 등 취득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혁]

구분	2014.1.1. 이후	2015.1.1. 이후	2016.1.1. 이후	2021.1.1. 이후	2023.1.1. ~2024.12.31.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상 준공공임대주택	좌동	「민특법」 상 기업형(현행 공공지원)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현행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민특법」 상 민간건설임대주택	좌동
임대기간	10년 이상	8년 이상	8년 이상	좌동	10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50% (단, 10년 이상 60%)	50% (단, 10년 이상 70%)	좌동	70%

□ 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또는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임대주택공급의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민간의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갱신계약 거절·보증금 미반환 등의 주거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등을 적용받는 등록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된다면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따라 각각 3년과 5년으로 제안된 조세특례 적용기한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

7.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과세특례 연장 등 (엄태영·윤준병·최은석·정태호의원안, 정부안)

개 정 안	개정안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9)	□ 적용기한 연장 등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하여 대상사업자 추가 (최은석의원안)
-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	
-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추가 (최은석의원안)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	
○ 사후 관리	○ 대상자 추가
-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 (현행과 같음)
	-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최은석의원안)
○ 적용기한	○ 적용기한 연장
- 2024. 12. 31.	- 2026. 12. 31. (엄태영의원안) - 2027. 12. 31. (최은석의원안·정부안) - 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 엄태영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72),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최은석의원안 2024. 10. 16. 발의(의안번호 4737),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5건의 개정안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엄태영의원안)이나 2027년 말(최은석의원안·정부안) 또는 2029년 말(최은석의원안)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최은석의원안*은 동 과세특례를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하고,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동 특례의 대상으로 추가시키고 있음.

* 최은석의원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가.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44]와 공공매입임대주택[45]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해당 토지에

---

4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4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 동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을 보면, 제도가 도입된 2022년도 11억원에서 2023년도에는 1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및 2025년에는 감면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단위: 건수, 억원)

	2022	2023	2024	2025
소득세	11	10	2	2

* 2024년 및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2029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을 촉진하여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됨.

토지 소유자 양도세 감면을 통한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위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통해 우량 입지의 매입임대주택 확보 가능 및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용 절감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특히,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토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유인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음.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계획안]

(단위 : 만호)

구분	’23	’24	‘25	‘26	‘27	합계	평균
공급주택수	3.5	3.5	4.8	6.1	3.5	21.4	4.3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동 조세특례조항의 사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속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토지 양도자”에게 감면한 세액 상당액을 토지 양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추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액감면의 혜택이 토지 매입가격 하락 및 사업비 절감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귀착되고, 주택건설 및 공공주택사업자에게의 양도의 지연 발생시 귀책사유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토지 양도자”에게 감면한 세액 상당액을 토지 양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추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나.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양도 추가

□ 최은석의원안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으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동 과세특례를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하고,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각한 경우 양도세를 10%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2024년 8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모델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였음.[46]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급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모델로서 규제와 지원 정도에 따라 ①자율형, ②준자율형, ③지원형으로 구분됨.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7]은 위와 같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최소 2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

46) 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2024. 8. 28.
4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574)

을 공적의무와 공적지원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임대료 규제, 임차인 자격,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은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부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다만,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등 법적 근거를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후에 동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57

8.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제104조의24)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로 완전 또는 부분 복귀한 기업	○ (현행과 같음)
○ 세액감면율	○ 세액감면율:
-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 7년 100% + 3년 50%	-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 (현행과 같음) (엄태영·한병도·윤준병·김주영·정태호의원안, 정부안) 9년 100% + 5년 50% (최은석의원안)
- 수도권 내 부분복귀: 3년 100% + 2년 50%	- (현행과 같음)
○ 업종요건: 국외사업장과 국내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4.12.31.	○ 적용기한 - 2026.12.31.(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 2027.12.31.(한병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2029.12.31.(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5. 1. 1.

* 엄태영의원안 2024. 6. 17. 발의(의안번호 526), 한병도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13), 최은석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8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김주영의원안 2024. 10. 23. 발의(의안번호 485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7건의 개정안은 국내에 복귀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년~5년 연장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내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최은석의원안은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의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의 규정에 따른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제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이후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제도 도입시에는 해외사업장을 완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완전복귀의 경우에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였으며, 감면을 받기 위한 복귀지역은 수도권 밖으로 한정하였고, 2013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제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으며, 동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음. 부분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것은 완전복귀 이외에는 대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48]

2016년 시행 법률에서는 동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도까지 연장하였고, 2017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세액감면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임.

48)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검토보고서, 2012.10., p.147

또한, 2019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을 대기업까지로 확대하면서,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100% 세액감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였음.

이후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법률에서는 창업 및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을 통한 국내복귀의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감면대상 복귀방법을 확대하였으며, 2021년 세법개정에서는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024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음.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2024년 시행 법률에서는 완전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과 지원기간을 최초 7년간 100%와 이후 3년간 50%로 확대하였음.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주요 변화]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11</th><th>2013</th><th>2016</th><th>2017</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4</th></tr>
<tr><td rowspan="4">세액감면대상 및 감면율</td><td>완전 복귀</td><td>모든 기업</td><td>모든 기업</td><td>모든 기업</td><td>모든 기업</td><td>모든 기업</td><td>증설 추가</td><td colspan="2">모든 기업</td></tr>
<tr><td>감면율</td><td colspan="6">5년간 100% + 2년간 50%</td><td>7년간 100% +3년간 50%</td></tr>
<tr><td>부분 복귀</td><td>-</td><td>중소 기업</td><td>중소 기업</td><td>중소·중견기업</td><td>모든 기업</td><td>증설 추가</td><td colspan="2">모든 기업</td></tr>
<tr><td>감면율</td><td>-</td><td colspan="3">3년간 100% + 2년간 50%</td><td colspan="3">5년간(수도권 3년간) 100%+2년간 50%</td><td>(수도권) 3년간100% +2년간 50% (비수도권) 7년간100% +3년간 50%</td></tr>
<tr><td colspan="2">세액감면대상 복귀지역</td><td>수도권 밖</td><td>수도권 밖</td><td>수도권 밖</td><td colspan="5">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td></tr>
<tr><td colspan="2">적용기한</td><td>2012년말</td><td>2015년말</td><td>2018년말</td><td>2018년말</td><td>2021년말</td><td colspan="2">2024년말</td></tr>
</table>

동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을 보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액 감면실적은 2014년도 1,000만원에서 2023년도에는 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및 2025년에도 감면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실적]

(단위:억원)

신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세	0.1	0.1	0.1	0.2	0.4	0.1	0	0	0	0	0	0
법인세	-	3.7	5.7	2.3	2.8	8	1.6	3	8	12	59	61
합계	0.1	3.8	5.8	2.5	3.2	8.1	1.6	3	8	12	59	61

주) 2024년 및 2025년은 전망치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실적은 시기별로 등락을 보여 왔으나,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71개사가 국내복귀하는 등 전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투자환경 속에서 복귀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4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46개사가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특히 2023년 국내복귀기업 22개사 중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40.9%(9개)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현황]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현황) 법률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26개社

○ 연도별: ('14)15 → ('15)2 → ('16)10 → ('17)4 → ('18)8 → ('19)14 → ('20)23 → ('21)26 → ('22)24 → ('23)22

○ 진출국가별: 중국 113, 베트남 16, 미국 4, 필리핀 2, 인도네시아 2, 멕시코·대만·일본·인도·미얀마·방글라데시 9

○ 기업규모별: 대기업 4, 중견기업 34, 중소기업 108

○ 업종별

전자	자동차	금속	기계	주얼리	화학	신발	섬유	포장재	기타	계
41	30	17	11	11	9	8	6	5	8	146

○ 국내복귀지역

충남	전북	경기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구	충북	세종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계
19	19	20	24	17	14	7	8	6	3	3	2	3	1	146

< 국내복귀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단위 : 개社)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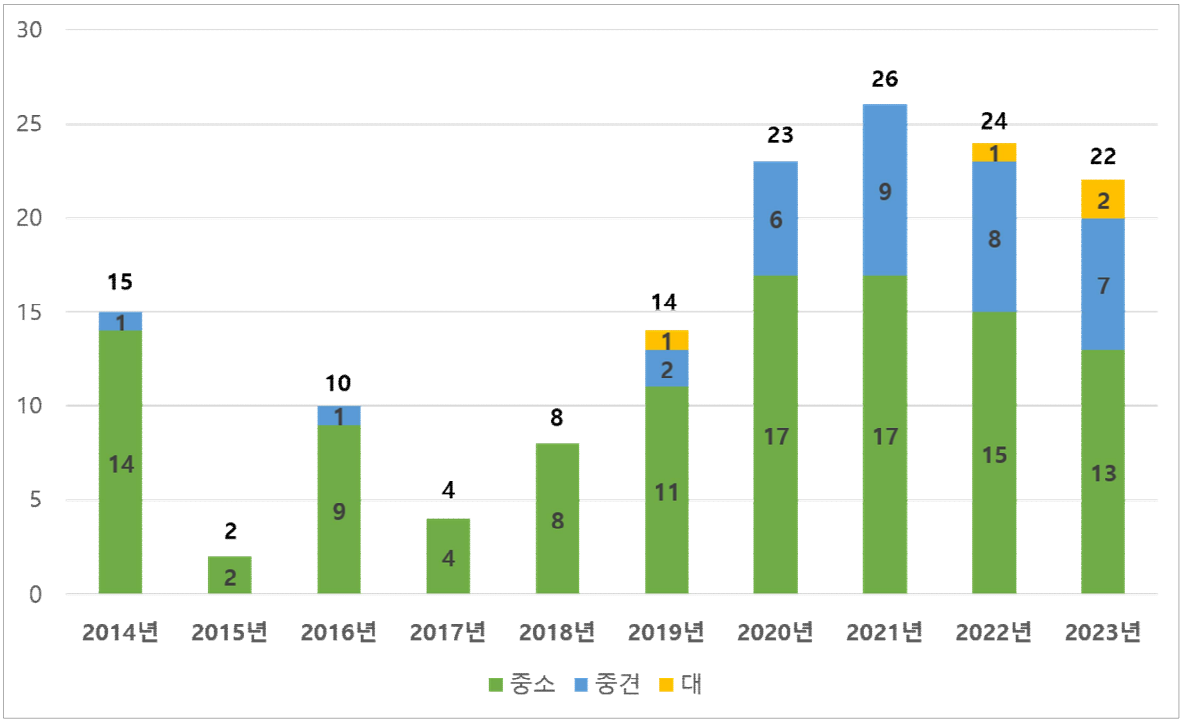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가.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개정안은 2024년말 일몰이 예정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2년~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복귀기업 수의 증가와 함께 2014년 745억원에서 2023년 1조 1,361억원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 고용계획 규모 또한, 2014년 685명에서 2022년 1,794명, 2023년 1,281명으로 증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규모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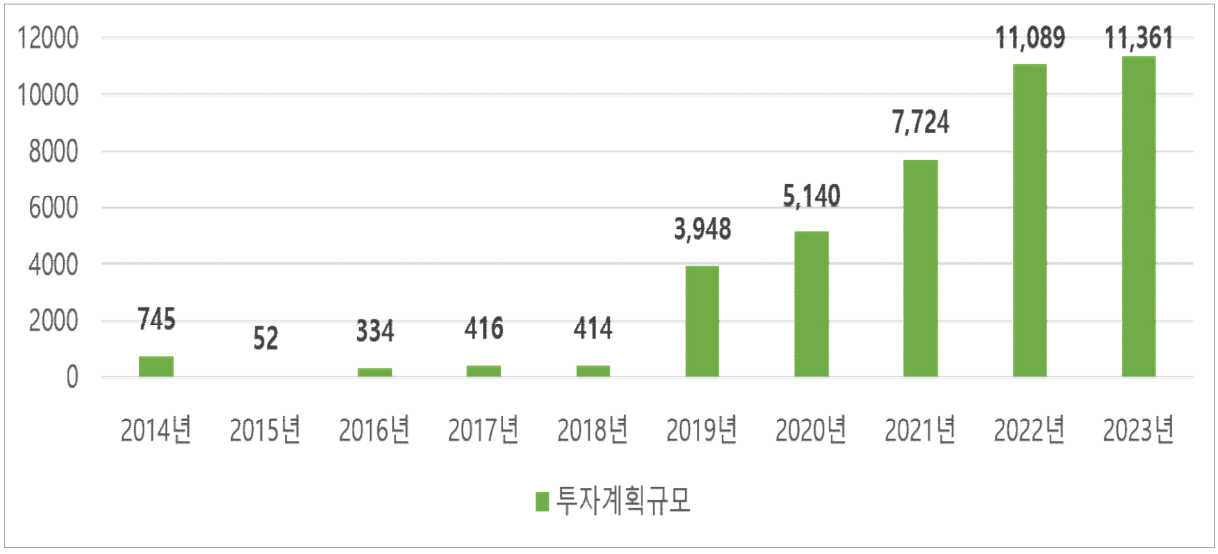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 고용계획 규모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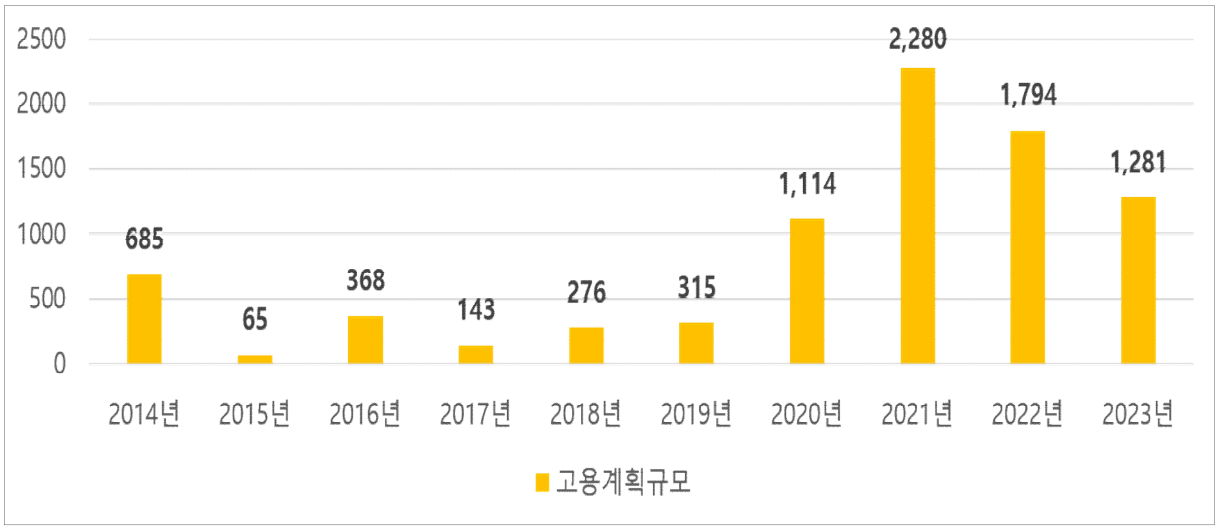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진출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보조금 지원(49.7%), 법인세(소득세) 감면(26.6%), 금융(대출/보증) 지원(6.5%), 자동화 설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4.7%) 등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49]

둘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는 국내 자체 공급망 확보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활동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수입은 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통상환경 급변 등 예상하지 못한 국제적인 충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함.

4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년 해외진출기업 경영현황 및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보고', 2023.

특히 과거 생산비용의 절감방식에서 공급망 안정 위주로 산업구조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공급망의 내부화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동 제도에 따른 세액 감면실적이 2023년 기준 12억원에 불과하여 과세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개정안은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년~5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9.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제118조의2)	□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 (현행과 같음)
- 완전복귀: 100%	
- 부분복귀: 50%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	- 김주영의원안:2026년 12월 31일
	- 정부안·한병도·정태호의원안: 2027년 12월 31일
	- 윤준병·최은석의원안: 2029년 12월 31일

* 한병도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13), 최은석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8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3085), 김주영의원안 2024. 10. 23. 발의 (의안번호 485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4975), 정부안 2024. 9. 2. 발의 (의안번호3522)

□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하는 경우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김주영의원안은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정태호의원안, 한병도의원안은 2027년까지 3년, 윤준병·최은석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완전복귀 귀업은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100% 감면하고, 부분복귀 기업은 관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0].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수입자본재 관세감면은 2013년도에 도입되어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적용[51]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관세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한도를 과거보다 2배 상향하였으며[52], 2019년도부터는 감면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한도 제한을 폐지하였음.

□ 최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을 보면, 국내복귀기업 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국내복귀기업이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국제 정세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체계의 안정적 구축 및 첨단산업의 유턴투자 촉진을 위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였고, 이는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및 요건을 완화하고,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023년 570억원→2024년 1,000억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53]

설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내국인일 것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완전복귀의 경우 관세의 100%를, 부분복귀의 경우 관세의 50%를 각각 감면함.

52) 완전복귀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부분복귀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함.

53)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2024. 5. 7.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현황

□ (유턴기업 선정 현황)

○ 2020년 이후 연 20개 기업 이상 복귀 중임 ('14~'19: 연평균 8.5개, '20~'23: 연평균 23.8개)

○ 연도별 유턴투자규모(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3,948	5,400	7,715	11,078	11,361

○ 복귀 기업의 81.5%는 비수도권을 복귀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충남 19개, 경북 24개, 전북 14개, 부산 14개, 대구 8개 등)

※ 유턴기업들은 2023년 기준 약 1,281명 고용 투자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진출기업의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지속적인 세제지원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함으로써 국내 산업활동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성공적인 '리쇼어링(re-shoring)[54]'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2022년 기준 5조 2,548억 1,600만불의 FDI 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2022년 기준 누적 36만 4,904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55]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 자료와 같이 국내복귀 기업의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대 국내복귀 리쇼어링 기업은 오프쇼어링 및 확장기업[56]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

54)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함(한경 경제용어사전).

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례로 보는 미국 공급망 재편 동향', 2024. 7.

이 낮은 특징을 갖는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57]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 국내복귀를 고려하는 해외진출기업들이 조세지원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가 일정부분 실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실태분석 조사에 따르면 국내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법인세 등 감면(40%)과 이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28%) 등이 지목되고 있음[58].

□ 한편, 김주영의원안은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안과 한병도의원안, 정태호의원안은 2027년 12월 31까지로, 윤준병의원안과 최은석의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평가를 의무화[59]하고 있으므로, 적용기한

56) 확장기업: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투자하는 기업, 오프쇼어링 기업: 국내에서는 투자를 회수 또는 유보하고 해외에서만 투자하는 기업

57)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 결정 요인, KDI FOCUS, 2023.11.

58) 참고로 중복응답을 허용한 수치임(KOTRA, '중국 및 동남아 진출 우리기업 실태조사 분석', 2016.11, p.96)

59)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